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5156706 판결 [구상금, 손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산
담당변호사 성창재, 이진성

피 고 1. A

2. B

피고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

변 론 종 결 2022. 5. 11.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8,223,648원 및 그 중 77,761,875원에 대하여 2021. 6. 16.부터 2021. 8. 22.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21. 2. 2. 체결된 매매계약을 78,223,648원 및 그 중 77,761,875원에 대하여 2021.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77,761,875원에 대한 2021.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원리금 합계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원고는 2019. 5. 17.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 9,500만원, 보증기간 2019. 5. 17.부터 2024. 5. 16.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중소기업자금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의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한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적용보증료율에 원고 소정의 연율을 가산한 비율에 의한 위약금,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채채무까지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21. 3. 23. 이자연체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1. 6. 16.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77,761,87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한편 원고의 보증채무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한의 만료일의 익일인 2021. 5. 18.부터 대위변제일 전일인 2021. 6. 15.까지 존재하여, 위 기간 동안 잔존하는 주채무금에 대한 적용보증요율 1%에 원고의 연율 0.5%를 가산한 1.5%의 비율에 의한 위약금

91,990원(=77,187,500원×15/1,000×29/365, 10원 미만은 버림)과 법적절차비용(대지급금) 369,783원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 A의 부동산 처분 등

(1) 피고 A는 2021. 2. 2.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와 매매대금을 37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1. 4. 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31149호로 피고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달리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사업부진으로 원고를 비롯한 금융기관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 ① 원고와 피고 A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7호증, 을나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채무금으로 78,223,648원(=대위변제금 77,761,875원 + 위약금 91,990원 + 법적절차비용 369,783원) 및 그 중 77,761,875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6.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1. 8.

22.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21. 6. 16. 원고의 대위변제금 지급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피고 A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여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고, 위 처분행위의 시점과 피고 A의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이므로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의 항변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과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을나제2호증의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 A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 ②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는 위 부동산 인근 주택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2021. 1. 중순경부터 아파트로 이사하기 위해 매물을 찾다가 2021. 1.말경 거주지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 ③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37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대금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조건의 아파트의 일반적인 시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 ④ 그 밖에 달리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B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우관제

별지